

공 고 문
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급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대상자: 표 참조
2. 공고기한: 2025. 6. 25. ~ 2025. 7. 25.
3. 공고방법: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

연번	대상자 성명	생년월일	주민등록증 발급기간	공고일자	공고사유
1	이*현	2008.06.28.	2025.07.01. ~ 2026.06.30.	2025.06.25.	폐문부재
2	이*준	2008.06.16.	2025.07.01. ~ 2026.06.30.	2025.06.25.	폐문부재
3	이*호	2008.06.14.	2025.07.01. ~ 2026.06.30.	2025.06.25.	폐문부재
4	정*원	2008.06.07.	2025.07.01. ~ 2026.06.30.	2025.06.25.	폐문부재
5	김*겸	2008.06.28.	2025.07.01. ~ 2026.06.30.	2025.06.25.	폐문부재
6	문*정	2008.06.30.	2025.07.01. ~ 2026.06.30.	2025.06.25.	폐문부재
7	김*범	2008.06.24.	2025.07.01. ~ 2026.06.30.	2025.06.25.	폐문부재
8	이*정	2008.06.07.	2025.07.01. ~ 2026.06.30.	2025.06.25.	폐문부재
9	정*서	2008.06.19.	2025.07.01. ~ 2026.06.30.	2025.06.25.	폐문부재
10	류*준	2008.06.09.	2025.07.01. ~ 2026.06.30.	2025.06.25.	폐문부재

※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최대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한 내에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및 신분확인 신분증 지참)하시어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담당자: 이영진/문의전화: 031-5189-4465)

2025년 6월 25일

동탄4동장

